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 순 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13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6.

발 의 자 : 김순옥, 고찬양, 박학용,
신찬호, 이충현, 김성한

1. 제안이유

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,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현행 조례에 맞추어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정의함(안 제2조제3항)
- 나.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의2)
- 다.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나. 협조부서 : 가족정책과
- 다. 입법예고 : 2024. 1. 19. ~ 2024. 1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다자녀가정 의료비(이하 “의료비”라 한다)”란 다자녀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아 이상 자녀(이하 “영유아”라 한다)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납입한 진료에 드는 비용과 처방된 약제 구입 비용을 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)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의료비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항의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. 단, 영유아는 신청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.

- ④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.

- ⑤ 의료비는 신청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, 지원금액과 기준은

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. 단, 둘째아에 한하여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셋째아 이상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 2.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
- ⑥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.
- ⑦ 의료비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중단”을 “중단하고 환수조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제2조3호 및 제4조의2의 다자녀가정 의료비 개정사항은 둘째아에 한해 2025년 1월 1일 기준 지원대상 가정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	<p><u>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.</u></p> <p>④ <u>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.</u></p> <p>⑤ <u>의료비는 신청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, 지원금액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. 단, 둘째아에 한하여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셋째아 이상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</u> 2. <u>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</u> <p>⑥ <u>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.</u></p> <p>⑦ <u>의료비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우대 및 지원중단)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<u>중단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우대 및 지원중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중단하고 환수조치</u>----- -----.</p>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제32조(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4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

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